



한국환경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생분해성수지제품 재활용의무이행 관련 알림

1. 환경부 자원재활용과-580(2023. 03. 09.) 「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안내」 관련입니다.
2.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및 포장재는 그 인증취지, 제품의 성분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및 포장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다만, 기인증이 종료되거나 생분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인증받지 못한 제품은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관리될 수 있음

붙임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안내 1부. 끝.

한국환경공단이사장



수신자 바[제도운영], 각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,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

★대리 공아름 차장 이성진 부장 전결 03/13 선우영식

협조자

시행 포장재EPR운영부-563 (2023. 3. 13.) 접수 ()
 우 / http://www.keco.or.kr
 전화 032-590-4207 /전송 / kkongg@keco.or.kr / 비공개(5)